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납품업자와의 거래개시 및 거래중단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3장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4장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6장 분쟁의 해결 및 제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상품 운영을 위해 납품업자와 약정을 체결할 시 납품업자가 쿠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쿠팡과 납품업자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팡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시한다.
- ② 쿠팡은 상품 운영을 위해 납품업자와 상담 또는 업무를 진행할 시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기본 원칙)

- ① 쿠팡은 이 지침 외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납품업자와의 거래개시 및 거래중단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3조 (납품업자와의 거래 개시 절차)

- ① 납품업자와의 거래 개시는 로켓배송 입점 신청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며, 이를 로켓배송 입점 신청 시스템(supplier.coupang.com/welcome/join/index.html),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에 공개한다.

제4조 (납품업자와의 거래 종료 사유)

- ① 납품업자와의 거래 중단 또는 종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며, 이를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에 공개한다.

제5조 (납품업자와의 거래 종료 절차)

- ① 쿠팡이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의 해지 조항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쿠팡은 거래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대금 정산, 납품업자 자료의 반환, 계약 해지 절차 등)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장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6조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 등 절차)

- ①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목표구간 및 수취율 등은 납품업자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며, 이를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에 공개한다.

제4장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7조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 절차)

- ① 판매촉진행사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상호 합의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 시 '대규모 유통업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며, 이를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에 공개한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8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고,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떠한 부당한 강요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1. 서면계약체결 의무
2. 부당한 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
3. 부당한 상품 반품 금지
4. 판매촉진비용 등의 부당 강요 금지
5.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6.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7.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8. 부당한 계약 변경 등 불이익 제공 금지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한 상품 반품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 (가족구성원 등 이해상충 방지)

①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납품업자 임직원 등이 쿠팡 임직원의 가족구성원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경우, 쿠팡은 이해상충 정책 및 기타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겸업, 외부 투자 및 활동 : 쿠팡 임직원 또는 가족구성원이 납품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제3자에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2. 개인적인 관계 : 가족구성원을 관리 또는 가족구성원의 관리를 받는 경우, 혹은 가족구성원을 직원이나 제3자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경우
 3. 경제적 이해관계 : 임직원 또는 가족구성원이 쿠팡의 납품업자를 포함한 제3자와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인해 쿠팡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이 저해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
 4. 제3자와의관계: 선물/향응 또는 기타 혜택의 교환 등 쿠팡의 비즈니스 관계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제3자와의 관계
- ③ 제1항에 반하여 납품업자 임직원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납품업자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위반 행위자는 이해상충 정책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분쟁의 해결 및 제재

제10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 ①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 및 별첨 지침을 위반하거나 쿠팡과의 거래 중 불공정한 처우 등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 (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쿠팡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실사 및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납품업자에게 조사된 사실관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납품업자 피해 구제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신고 또는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 ③ 쿠팡은 본 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고 또는 접수 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납품업자 및 납품업자 관계자의 정보와 인적 사항 등을 비밀정보로 보호하고 납품업자가 신고 또는 접수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보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 중 발생한 납품업자의 민원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 (제재)

① 쿠팡은 납품업자의 신고 또는 접수 건을 통해 또는 직권으로 쿠팡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공정거래 준수정책, 기타 사규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임직원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위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을 최종 검토 및 결정한다.

② 쿠팡 임직원의 위반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 쿠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별 첨

지침1.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지침2.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지침3.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지침4.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

지침5.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 기준과 절차

지침6.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과 절차

지침7.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준수 기준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 거래(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쿠팡과 납품업자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조건 결정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② 쿠팡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거래 조건 및 개시 관련

제3조 (납품업자 선정 및 거래 개시 관련)

- ① 쿠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납품업자 선정 및 거래 개시를 진행한다.
- ② 납품업자는 로켓배송 입점 신청 시스템(supplier.coupang.com/welcome/join/index.html)을 통해 입점 신청을 진행한다.
- ③ 쿠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개시할 납품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취급 상품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2. 인증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3. 기타 시장상황 등 쿠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④ 쿠팡은 거래를 개시할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 ⑤ 납품업자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를 통해 상품견적서를 등록한다.
 - ⑥ 쿠팡은 본 조 제 5 항에서 납품업자가 등록한 상품견적서를 통해 쿠팡이 취급할 상품에 대해 상품군별로 정해진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 ⑦ 사전 점검 진행 이후 쿠팡은 납품업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각 상품의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쿠팡은 필요시 납품업자와 상품구성, 상품 공급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 체결 절차)

- 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 전 상품공급계약을 작성 및 체결한다.
- ② 쿠팡은 개별 상품에 대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구매발주서를 발행하며, 납품업자가 쿠팡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공급가), 납품장소, 납품기일 등은 구매발주서로 정한다.
- ③ 상품공급계약 또는 구매발주서의 내용에는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2.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3.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제 5 조 (계약 이행 조건)

- ① 쿠팡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조건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소급 적용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② 쿠팡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각종 명목의 수수료나 경제적 불이익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3장 거래 종료 관련

제6조 (거래 종료 관련)

- ① 쿠팡과 납품업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체결한 상품 공급계약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진술사항, 보증사항, 확약사항 또는 의무사항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에 대한 타방 당사자의 시정 요구를 받고 30 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해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 ② 쿠팡과 납품업자는 일방 당사자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해 상품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함으로써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1.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제 8 조의 비밀유지의무, 제 13.3 조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계 기관에 의해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제 3 자의 신청에 따라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폐업 또는 주요 재산(상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업자가 쿠팡에 대하여 갖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5.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제 10 조 및 제 13.4 조의 보험가입 또는 제조물책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품의 결함으로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원활한 상품공급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이외에도 쿠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 이력이 발견될 경우 거래 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납품업자가 쿠팡에 공급한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 이력
2. 쿠팡의 "상품평 및 상품문의 운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3. 부정클릭 등 악의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4.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쿠팡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납품업자가 불응할 경우
5.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납품업자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또는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기타 쿠팡과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여부

제4장 기타

제7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 개시, 중단 과정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결정, 변경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 3 조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협의 및 약정 체결)

① 쿠팡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납품업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다.

② 쿠팡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전에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쿠팡은 납품업자와 동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판매장려금 관련 약정 서면이 포함된 연간거래 기본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본 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쿠팡은 해당 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한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제4조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 ① 쿠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③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은 쿠팡과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고, 쿠팡과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제5조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변경기준)

쿠팡과 납품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증액하거나, 지급할 조건을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액의 증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과 같이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서면 통지로 변경 등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7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6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판매장려금 협의, 결정, 변경 등 과정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 거래(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판매촉진행사 등 진행 절차

제 3 조 (협의 절차 및 약정 체결)

① 판매촉진행사 이전에 쿠팡과 납품업자는 판매촉진행사 대상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판매촉진행사를 포함한 공급수량 등을 협의하며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약정(이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을 작성 및 체결한다.

② 쿠팡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판매촉진행사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납품업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일방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정된 판매촉진행사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촉진행사 이전에 쿠팡과 납품업자는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약정과 동시에 쿠팡은 그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쿠팡과 납품업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비율 또는 액수

제4조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

- ①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매출증진 효과가 발생하는 판매촉진행사를 당해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을 쿠팡과 당해 납품업자 간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납품업자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쿠팡과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쿠팡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쿠팡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쿠팡은 납품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전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기획주체, 요청 경위, 목적과 내용, 납품업자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 효과, 비용분담 내역과 협의과정, 납품업자 및 쿠팡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 상품의 시장현황, 소비자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5조 (판매촉진행사 약정 이행 절차)

- ① 쿠팡은 본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다.

- ② 쿠팡은 판매촉진행사 후 기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내용대로 판매촉진행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당초 약정 내용과 달리 판매촉진행사가 이행되었을 경우, 쿠팡은 지체 없이 납품업자에 통지하고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한다.
- ③ 쿠팡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기재된 판매촉진행사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
- ④ 쿠팡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거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각종 명목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제6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판매촉진행사 진행 과정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 거래(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조 (금지사항)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쿠팡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쿠팡은 계약서를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 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 장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 체결 전 발주가 필요한 경우 쿠팡과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를 요청한다.

2.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외에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아니 한다.

3.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아니 한다.
4.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되었거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발주된 상품과 다른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지 아니 한다.
6.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행사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법상 요건을 갖춘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7.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8. 납품업자에게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납품 또는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다른 사업자와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등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하는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아니 한다.
9.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쿠팡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전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받지 아니 한다.
11.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2.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지 아니 한다.
13.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이상 전가하지 아니 한다.
14. 납품업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 납품가 인하 등을 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1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이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지 아니 한다.

16.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 한다.

17.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쿠팡이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를 변경하지 아니 한다.

18. 납품업자와의 입점 상담 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일반 현황 자료, 재무 상태 및 신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 외에는 납품업자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19. 불공정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0. 납품업자로부터 금전, 선물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21.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접대(식사, 술자리, 골프 등)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3장 기타

제4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3. 00. 00. 제정 및 시행한다.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의 거래(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를 통해 납품 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반품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이하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반품 요건 및 세부지침

제3조 (반품 요건)

쿠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쿠팡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쿠팡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반품 세부 지침)

-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쿠팡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에 반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반품조건에는 반품대상을 특정하는 방법과 절차, 반품이 이루어지는 시점, 반품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납품업자가 오손·훼손한 상품 또는 하자 있는 상품을 납품한 경우 반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에 하자 등이 발견되면 그 발생 원인이 쿠팡 또는 납품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상호 확인한 후,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 ③ 쿠팡이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크기 등 계약 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쿠팡은 즉시 납품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업자와 상호 확인한 후 반품하여야 한다.
- ④ 쿠팡이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이때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반품된 상품을 납품업자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수익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납품시점에 비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차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품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반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직매입거래시 쿠팡이 계약체결 시점부터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미리 준 경우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시즌상품)은 반품이 허용될 수 있으며 어떤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 해당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쿠팡에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⑦ 신선농·수·축산물의 반품 기간은 납품업자의 납품 시점부터 쿠팡이 당해 상품의 검수·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제3장 반품 관련 서면의 기재

제5조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기재)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시 납품업자와 합의된 경우 상품의 반품조건 및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 주어야 한다.

② 쿠팡은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 상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이라도 쿠팡과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쿠팡과 납품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

해야 한다.

제4장 기타

제6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와 반품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과 절차**

쿠팡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 거래(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3조 (금지사항)

쿠팡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납품업자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공급가격, 공급 물량, 공급시기 및 방법,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반품조건 등)
2.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3.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거래처별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4.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거래처별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행사 내용 및 거래조건 등)

5.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제4조 (예외사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납품업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거나 납품업자와의 거래 개시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1.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납품업자의 일반 현황(직원수, 취급 상품명 등)
2. 납품업자의 공개된 재무제표
3. 납품업자의 연간 전체 매출액(단, 거래처별, 채널별 매출액은 제외)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없는 정보

③ 쿠팡이 납품업자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쿠팡은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하고, 수령한 경영정보는 요구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5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에 대해 경영정보 등을 요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업자가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

**대규모유통업법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준수 기준**

쿠팡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가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쿠팡과 납품업자 간 각종 비용 부담 및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지침은 쿠팡의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상품의 등록 및 발주 관리 등의 업무 진행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비용 부담

제3조 (금지사항)

쿠팡은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의 입고·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광고·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쿠팡이 창고 등 시설에 상품을 보관시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경우
2. 쿠팡의 검수·검품을 거쳐 매입처리된 상품이 이후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게 멸실 또는 훼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3. 쿠팡의 검수·검품을 거쳐 매입처리된 상품을 판매시키면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4. 개별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매출증진 효과가 발생하는 판매촉진행사가 아니라 쿠팡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5.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불참시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등으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분담)

-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매출증진 효과가 발생하는 판매촉진행사를 당해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을 쿠팡과 당해 납품업자 간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쿠팡과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쿠팡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당해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쿠팡과 납품업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 ④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쿠팡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

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쿠팡은 납품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전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기획주체, 요청 경위, 목적과 내용, 납품업자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 효과, 비용분담 내역과 협의과정, 납품업자 및 쿠팡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 상품의 시장현황, 소비자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3장 기타

제5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쿠팡은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납품업자는 쿠팡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쿠팡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쿠팡 웹사이트 또는 윤리경영 핫라인, ethics 채널(ethics@coupang.com),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coupang.com) 내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

쿠팡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지침은 2023. 05. 01. 제정 및 시행한다.